



##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25. 10. 1.] [대통령령 제35811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국토교통부 (물류정책과-국가물류기본계획, 시행계획) 044-201-4003

국토교통부 (물류정책과-국가물류정책위원회) 044-201-3996

국토교통부 (물류정책과-물류신고센터, 물류산업지원) 044-201-4000

국토교통부 (물류정책과-우수물류기업,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, 물류관리사) 044-201-3997

국토교통부 (물류정책과-국제물류, 국제물류주선) 044-201-4005

해양수산부 (항만물류기획과) 044-200-5752, 5751

**제1조(목적)** 이 영은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)** 「물류정책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"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. <개정 2019. 2. 12.>

**제3조(물류사업의 범위)**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

**제4조(물류현황조사지침)**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(이하 "물류현황조사지침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조사의 종류 및 항목
2. 조사의 대상 · 방법 및 절차
3. 조사의 체계
4. 조사의 시기 및 지역
5. 조사결과의 집계 · 분석 및 관리
6. 그 밖에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물류현황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)** 법 제11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「국토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,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(이하 "국가물류기본계획"이라 한다)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0. 1. 7.>

1.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
2. 물류시설 · 장비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
3. 국제물류의 촉진 ·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4. 그 밖에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)**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연도별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 · 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한 후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8. 12. 11.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연도별시행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